

Question

안녕하십니까? 3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입니다.

3개 사업장의 특징은

- ① 각각의 대표는 다르지만 같은 재단입니다.
- ② 사업장당 근로자수는 A사업장 110명, B사업장 100명, C사업장 140명입니다.
- ③ 동일직종이며, 동일지역내 3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 ④ 건물당 이격거리는 10m~20m 정도입니다. 또한 구획내에 어떠한 타 건물도 없으며, 담장도 없습니다.
- ⑤ 직원들의 3개 사업장간 인사이동을 실시합니다.(근로계약, 단체협약에 명기)
- ⑥ 총무, 인사, 경리, 관리 및 기타 모든 업무를 동일 행정(같은 사무실)으로 하고 기타 현장직을 제외한 영업, 구매 등 관리부서는 모두 동일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예) 총무과 직원 5명 중 1명 A사, 2명 B사 2명 C사 소속
- ⑦ 노동조합은 3개 사업장 단일노조로 노조위원장도 1명입니다.
- ⑧ 임금협상, 단체협약서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 있는 사업장으로 법정 관리인 선임에 관해서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각 사업장당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둘 수 있으나, 귀 사업장의 경우 A, B, C 사업장의 대표가 각각 다르고 전체 근로자수도 300인을 초과하므로 A, B, C 각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공사규모가 120억 미만일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기술지도를 위탁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돌볼 인원이 필요하여 전담으로 안전관련 업무만 보게 한다면 이럴 경우에 안전보조원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하여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용으로 일정기간 차량을 임차하는 것과 안전순찰차량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것이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치 않다면 두가지 경우 중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 등에 한하는 것으로 동 차량 임차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당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한하여 동 업무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임차비용은 동 고시 별표 2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현재 당 사업장에서는 사무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 E-mail로 교육교재를 발송하여 교육·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 사내 E-Mail은 발송한 대상의 수신여부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교육훈련기록서를 대체하여 문서보관·관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E-mail외 교육훈련기록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한 교육교재를 E-mail로 발송한 때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나.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교육근로자의 수강 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